

2009년 연말정산

주요 변경 내용 및 유의사항 안내



최근의 소득세법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부양가족이 많은 납세자에게 유리하도록 개정되었으며, 중·저소득층의 세부담을 경감하여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근로소득자의 최대 관심사인 연말정산을 미리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연말정산 관련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을 미리 살펴보기로 한다.

* 2009년 개정세법 중 유의할 사항

1. 세율의 이하로 연간 관세표준 8,8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세부담이 경감된다.

2009년		2008년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이하	8%
1,200만원 ~ 4,600만원	16%	1,200만원 ~ 4,600만원	17%
4,600만원 ~ 8,800만원	25%	4,600만원 ~ 8,800만원	26%
8,800만원 초과	35%	8,800만원 초과	35%

※ 위의 표와 같이 소득세율이 전년에 비해 2% 또는 1% 정도 낮아졌으므로 세부담도 조금은 줄어들게 되었다.

2. 기본공제금액을 각 1인당 연 100만원에서 연 150만원 상향

부양가족이 많은 근로자 지원을 위해 기본공제 금액을 '09이후 1인당 연 150만원('08 이전 1인당 연 100만원)으로 인상하였다. 따라서 부양가족이 많은 근로자일수록 더 많은 기본공제금액을 적용받게 되었다.

3. 부양가족 공제시 여자의 연령 기준이 높아졌으므로 개정사항에 유의한다.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의 부양가족 대상 범위의 나이 요건이 남녀 모두 60세 이상으로 통일되었다. 즉 종전에는 여자의 경우 55세 이상이면 공제가 가능했으나 금년 연말정산시에는 남녀 모두 60세 이상으로 통일되었다. 따라서 작년에 공제받았던 어머님이나 자매도 공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4. 각종 소득공제 항목 상향조정

① 의료비 공제한도 변경

- 부양가족을 위해 사용된 의료비의 공제한도가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므로 의료비 지출영수증을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다.



② 교육비 소득공제 확대

- 취학전 아동·초·중·고등학생 교육비 공제 한도도 1인당 연 200만원에서 1인당 연 300만원, 대학생 교육비 공제 한도도 1인당 연 700만원에서 1인당 연 900만원으로 상향조정 되었으므로 자녀를 둔 학부모인 경우 공제의 폭이 확대되었다. 또한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용 1인당 50만원까지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영수증을 반드시 챙겨두어야 한다.

③ 주택자금공제 한도 확대

- 30년 이상 장기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연 1,000만원에서 연 1,500만원으로 확대되었다.

④ 혼인·장례·이사비용 특별공제 폐지되어 금년에 혼인을 한 여성이나 장례비용 지출액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없다.

⑤ 부모님에 대한 경로우대공제가 종전의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변경되었으므로 경로우대공제시 유의한다.

5. 기타 참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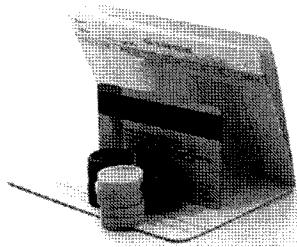
남편이 해외에서 건설근로자로 일하는 경우 종전에는 비과세금액을 100만원으로 했으나 150만원으로 상향조정 되었으므로 이점에도 유의한다. 또한 다음의 사항도 유의해둘 필요가 있다.

- ① 기부금명세서 제출 대상자도 종전의 100만원에서 50만원 이상 근로자로 확대되었다.
- ②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투자해 공제를 받았던 경우 종전의 50% 한도에서 30% 한도로 축소되었다.
- ③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임금삭감액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 직장인들이 연말정산 때 흔히 놓치기 쉬운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여성과 관련한 소득공제를 챙겨라

여성과 관련해서는 출산시 200만원의 소득공제와 부녀자 세대주공제 50만원 자녀양육비공제 100만원을 챙겨야 한다.



2. 따로 사는 부모님에 대한 소득공제

근로소득자들이 가장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은 따로 사는 부모님과 관련된 부양가족 공제다.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 공제를 받지 않았고, 자신이 부모님에게 매달 생활비를 보내드리며 부양하고 있다면 부모님(배우자부모 포함) 한분당 15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아들 뿐 아니라 출가한 딸이나 사위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특히 70세 이상인 부모님에 대해서는 부양가족 추가공제 100만원을 받을 수 있고, 부모님의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공제도 가능하다. 단 주의해야 하는 것은 사업을 하는 형제자매도 부모님공제가 가능하므로 다른 형제가 부모님공제를 받았는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부모님이 사업자등록증이 있어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초과하거나 근로소득이 500만 원을 넘으면 부모님공제를 받을 수 없다.

3. 암 등 중병환자 치료비용도 공제가 가능하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분류되지 않아 장애인등록증이 없더라도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병환자(암,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고엽제후유증 등)는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돼, 나이에 관계없이 추가공제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4. 동생이나 처제의 등록금을 대신 내주는 경우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같이 사는 동생이나 처제의 대한 등록금을 대신 납부했다면 연간 9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직장이나 학교 때문에 일시적으로 형제자매와 따로 살아도 같이 사는 것으로 보아 공제가 가능하고, 부모님이 소득이 없거나 적은 경우에는 현금으로 등록금을 대준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다.



5.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공제를 받으면 된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경우 이자상환액에 대해 일정한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때 주택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근로자 본인 명의이어야 하고, 구 주택을 구입하면서 대출금을 승계한 경우에도 공제된다.

6. 자녀 교복 구입비용에 대해 빠뜨리지 말고 공제를 받는다.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용 1인당 50만원까지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영수증을 반드시 챙겨서 공제를 받도록 한다.

7. 미용이나 성형비용, 부모님 보약 비용도 공제가 가능하다.

여성의 미용이나 성형수술비 등 성형비용도 의료비 공제대상이 되므로 반드시 공제항목에 포함시켜서 공제받도록 한다.

8.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맞벌이 부부는 일반적으로 공제대상에 대해 소득이 높은 쪽이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따라서 자녀나 부모님이 계신 경우 누구의 공제대상으로 할지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또한 자녀양육비 공제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를 누가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둘 중 한명이 선택해서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잘 활용하는 지혜도 필요하다.